

2020. 3. 9. 보도 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3월 12일 공개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3. 12.(목) 14: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대리인)	비 고
1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 심재철 외 107 (법무법인(유한) 해송 외 1)	국회의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0헌라1 국회의원 등과 국회의장 (병합)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 심재철 외 108 (법무법인(유한) 해송 외 1)	국회의장 외 1 (법무법인(유한) 바른)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 끝.

보 도 자 료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등]

[공 개 변 론]

헌법재판소는 2020년 3월 12일(목) 14:00 대심판정에서,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12. 23.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에 대한 당시 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청을 거부한 행위와 2019. 12. 27.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관영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을 가결선포한 행위 등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020. 3. 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2019헌라6 사건 청구인들은 청구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들(이하 ‘청구인 국회의원들’이라 한다)이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2020헌라1 사건 청구인들은 청구 당시 자유한국당과 위 국회의원들이고, 피청구인들은 국회의장과 국회이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2019. 12. 23.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였다. 위 피청구인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회기를 단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청구인 국회의원들은 위 피청구인에게 이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피청구인은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청을 거부하고, 찬반토론만을 허용한 다음 표결을 거쳐 회기를 단축하자는 수정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 그 후, 위 피청구인은 2019. 4. 24. 접수되어 2019. 4. 30.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985호 이하 ‘이 사건 원안’이라 한다)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이 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원안과 동일(제2019985호) - 이하 ‘이 사건 수정안’이라 한다]이 김관영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있는 점을 알린 다음,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한다고 하였다. 이후 위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었다.
- 이에 청구인 국회의원들은 2019. 12. 26. 위 피청구인이 2019. 12. 23.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위 청구인들의 무제한토론 요구를 임의로 거부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한 행위와 2019. 4. 24. 접수되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 사건 원안의 내용과는 다른 이 사건 수정안을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정행위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2019헌라6).

- 한편,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2019. 12. 27.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여, 이 사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20. 1. 7.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위 수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청구인 자유한국당의 입법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침해의 확인과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 및 피청구인 국회의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행위의 위헌,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라1).

□ 심판대상

-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하 ‘이 사건 회기결정의 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하고 위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한 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위 상정 행위의 무효 여부
-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12. 23. 이 사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정안 상정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위 상정 행위의 무효 여부
-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12. 27. 이 사건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 자유한국당의 기회균등의 입법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
- 피청구인 국회의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의 위헌, 무효 확인

□ 청구인 주장 요지

- 정당은 헌법 제8조에 특별히 규정되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공

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며, 비례대표선거에 있어 정당투표의 당사자가 되어 스스로 선거에 참여하고,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자유한국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선거와 국회의 입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청구인 자유한국당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국회법 등에서 무제한토론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청구인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회기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신청한 무제한토론을 거부하고, 이를 직권으로 상정한 행위는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무제한토론권에 관련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의·표결권 침해는 의회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이 사건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한 행위는 무효이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이 사건 원안과 함께 이 사건 원안의 수정안으로서 이 사건 수정안을 상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정안은 지역구의석수와 비례대표의석수를 종전과 같이 하고, 석패율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원안과 근간이 다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원안에 대해서만 의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신속처리안건 지정 없이 원안과 전혀 다른 이 사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안제출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비례대표선거제도를 개정하는 데 절차적으로 참여해야 할 청구인 자유한국당의 입법절차의 균등한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위헌·위법성이 중대하고, 수정안의 주요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직접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등 내용적인 위헌성 또한 있으므로,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무효이고, 피청구인 국회의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행위 또한 위헌, 무효이다.

피청구인 주장 요지

- 정당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당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선거법 개정 입법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자유한국당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7조 제2항이 국회의 회기를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은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에 ‘회기결정의 건’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는 것은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허용할 경우 연중 상시 무제한토론의 반복으로 입법불능 사태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법률안 등 실제적 의안에 대해서만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더라도 필리버스터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무제한토론의 대상 안건에 ‘회기결정의 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요구 거부행위는 적법하고,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수정안은 국회의석 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원안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① 국회의원 정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수를 현행과 같이 다시 조정하고, ② 원안에서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그 배분비율을 달리 적용되도록 수정하며, ③ 원안에서 도입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삭제하는 등의 변경에 그치고 있다. 이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새로운 제도나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된 내용과 틀을 유지하되 그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변경하는 등 수정을 가한 것이다. 또한 이는 실무상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이 사건 수정안이 적법한 수정안이라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판단 아래 행해진 것으로, 국회의 자율권 및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권한에 기초한 것인바,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판단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 국회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주요 쟁점

- 청구인 자유한국당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요구 거부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위 행위의 무효 여부
-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위 행위의 무효 여부

□ 당사자

- 청구인: 1. 국회의원 심재철 외 107(2019헌라6, 2020헌라1)
2. 자유한국당(2020헌라1)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권오현,
변호사 배보운
- 피청구인: 1. 국회의장(2019헌라6, 2020헌라1)
2. 국회(2020헌라1)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이수경